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고영찬 의원 발의]

의안번호	2627
------	------

발의일자 : 2024. 11. 12.

발 의 자 : 고영찬 의원

찬 성 자 : 도병두, 고성미 의원

1. 제안이유

5천만 원 이상의 관급공사 시 사업주에게 구민을 우대고용하도록 권장하여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서민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조례의 적용 범위(안 제3조)

다. 구청장의 책무와 사업주의 노력(안 제4조 및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제9조의2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2) 입법예고: 2024. 11. 15. ~ 2024. 11.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바. 그 밖의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

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관급공사를 도급받는 사업주(하도급 관계인 경우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사업주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우대고용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민의 일자리 창출

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 기관의 활성화

3.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 환경 개선

4. 그 밖의 고용창출 등 다양한 시책 개발

③ 구청장은 구민 우대고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에게 수주 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주의 노력) 사업주는 구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민 및 구에 있는 무료 취업알선 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구민
우대고용
2. 구민 우대고용 계획 및 고용현황 제출
3.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65호, 2024. 1. 9., 일부개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2024. 1. 9.>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 위한 고용·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전망에 관한 조사·공표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에 필요한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4. 산업·직업·지역 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6.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7.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고용촉진·고용안정 등을 실현하며,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기업경영기반의 개선,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고용기회를 늘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며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차별적 고용관행 등 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의2(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공표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대책의 추진성과를 확인하여 공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자리 창출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⑥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25.]